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6. 6. 26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96. 6. 12

나.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다. 회부일자 : 1996. 6. 15

라. 상정 및 의결

- 제4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1996. 6. 22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1996. 6. 22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가. 제안사유

- 동 재활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 일용직 운전원을 기능직화 하고
- 최근 일련의 대형사고들은 천재지변이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인력부족에 따른 관리부실로 일어난 인위재난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15조(대통령령 제 14647호)
- 지방자치법 제21조(법률 제4877호)
- 차량운전원 정원승인(기획 12220-303, '96. 4. 22)
-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시달(기획 12200-347, '96. 5. 4)

다. 주요골자

- 동 재활용차량 운전원에 기능10등급 19명 증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가스안전관리 인력보강 4명 증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 1)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19개 행정동에 맞추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재활용차량 운전원을 정규직인 지방기능직 10등급(운전원)으로 채용하여 동의 정원을 316명에서 3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 이들은 3D직종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에서, 이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 우리 구는 청소차량기사 70명 중 구청근무 기능직 34명, 일용직 13명, 동근무 일용직 23명으로 청소차량기사 중 36명이 일용직으로 기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9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17명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 그러나 동에 배치된 재활용차량 운전원(환경미화원)의 사명감과 국가관 고취 및 사기양양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 측면에서 기능직으로의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은 각각 2명씩 증원 하되 계장은 행정·기술직 복수직렬로, 직원은 기술직으로 실무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서 재난관리 기능의 실질화·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최근 국내 대형사고중 신행주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서해 훼리호 침몰, 청주 우암상가 붕괴,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등 각종사고는
 - 산업화, 도시화 등 인구증가로 인한 재난 취약요인이 많이 증가되어도, 안전의식의 결여로 후진국형 인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화, 전문인력 확충, 행정지도 감독의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할 안전지도계 기구를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 3) 그리고 최근 도시가스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가스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인력(화공직)의 부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생각할 때 전담계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광주 도시가스공장 화재·폭발사고, 천안시 부탄가스 재충전 화재·폭발사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그리고 95년4월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사망 101명, 부상 202명으로 그 피해가 엄청난 등 가스사고는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렇게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가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진형 대체연료이나 그 안전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디서 대형참사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폭발물이나 다름없는 가스안전관리의 전담기구인 가스안전계를 설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질의요지	답변요지
<p>○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재활용차량 기사가 21명임에도 불구하고 19명만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구청에서 승인 요청한 것인지 내무부지침에 의거 시달된 것인지 여부</p>	<p>● 우리 구에서는 신당동사무소 개소를 예측하여 20개동에 20명을 내무부에 요청하였으나 정원기준을 95년12월31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96년1월1일 개소된 신당동사무소는 제외되어 19개동의 재활용 차량기사 1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음.</p>
<p>○ 재활용차량 기사가 기능직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전과 전환후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p>	<p>● 재활용차량 기사가 기능직으로 전환될 경우 군경력과 유사경력이 없으면 호봉수가 1호봉이 되므로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정년연장, 체력단련비 등 추가 지급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일정한 년한 경과후에는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p>
<p>○ 근속기간이 짧은 재활용차량 기사가 기능직으로 모두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기근속자 중 일부가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p>	<p>● 현재 청소차량기사는 기능직과 일용직이며 예비기사는 청소차량기사 결원시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기사 중 장기근속한 자에 대하여도 재활용차량 기사를 기능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5. 토 론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